
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(한민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35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10.

발 의 자 : 한민수 · 이해식 · 허영
박상혁 · 채현일 · 이주희
김우영 · 이학영 · 강준현
김태선 · 이연희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편적 시청권으로 정의하고, 이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.

그런데, 최근 유료 종합편성채널에서 동계올림픽의 독점중계권을 획득한 뒤 단독 중계함에 따라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체육경기대회에 대한 국민의 시청권이 제약되는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실제 국민의 관심도를 반영하여 국민관심행사등을 분류하고 시청권 보장 수준 및 방법 등을 상세히 고시하도록 하면서,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업자 간에 자율협의체를 구성·운영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보편적 시청권의 실질적 보장을 촉진하려는 것임 (안 제76조제2항 및 제76조의6 신설).
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6조제2항 전단 중 “제76조의2의 규정”을 “제76조의2”로, “한다)를”을 “한다)의 종류·등급, 각 등급별 보편적 시청권의 보장 수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”로 한다.

제76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6조의6(사업자 자율협의체의 구성·운영)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보의 공유, 의견 조율 및 협력 촉진 등을 위하여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이 참여하는 사업자 자율협의체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 자율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第76條(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및 보편적 시청권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 76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편적 시청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 행사(이하 “국민관심행사등”이라고 한다)를 고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, 방송사업자 및 시청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</p> <p>③ ~ ⑤ (생략)</p> <p><신 설></p>	<p>第76條(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및 보편적 시청권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제76조의2----- ----- ----- ----- -----한다)의 종류·등급, 각 등급별 보편적 시청권의 보장 수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-----.</p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6조의6(사업자 자율협의체의 구성·운영)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보의 공유, 의</p>

건 조율 및 협력 촉진 등을 위
하여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
권자등이 참여하는 사업자 자
율협의체를 구성·운영할 수
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 자율
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
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
다.